

#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 자체투자실적 인정 설명자료

## 도입배경

- ESCO가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자체투자사업을 ESCO 투자사업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ESCO육성을 위하여 '자체투자실적 인정제' 도입
- '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' 개정 (06. 1월)을 통한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도 근거 마련
- '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규정' 제정(06. 8월)

## 적용대상사업 요건

- 당해년도에 성과배분 또는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설치를 완료한 ESCO사업(신청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사업)
- 동일 ESCO 투자사업에 대하여 1개 ESCO만이 신청 가능
- 준공일 기준 해당 분기에 신청하지 않은 투자사업 건은 추후 인정을 받을 수 없음
- 정부 ESCO자금 추천을 받은 경우 일부 자체 투자한 부분도 실적인정 신청을 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

##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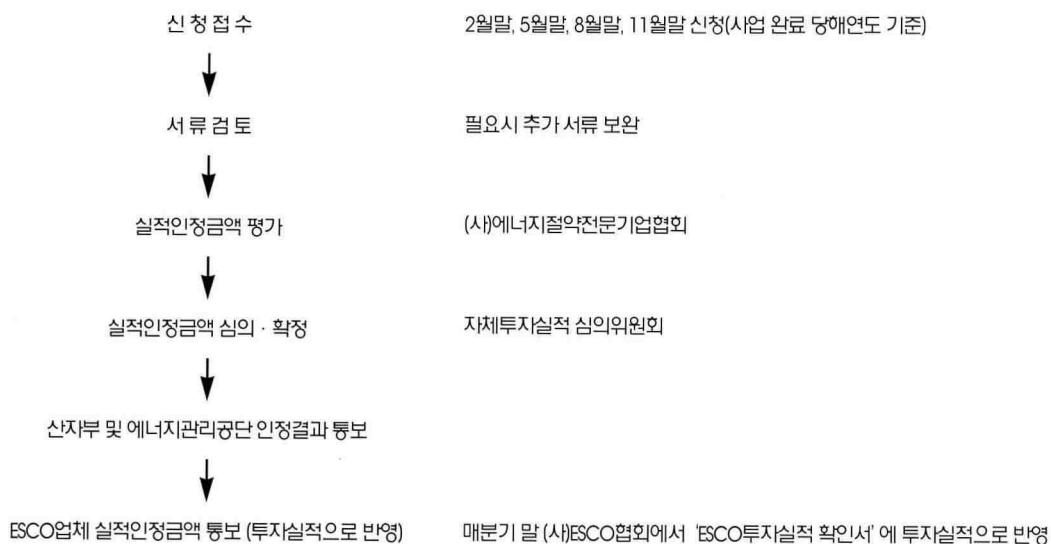
- ▶ 사업이 완료된 당해연도 2월 말, 5월 말, 8월 말, 11월 말까지 (사)ESCO협회에 자체투자실적 인정 신청
- ▶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에 준하는 서류

- ① 계약서 (에너지절약 성과배분/성과보증 표준계약서에 준한 서류)
  - ②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
    - 자체투자실적 신청 시설명세
    - ESCO의 사업자등록증(또는 납세번호증) 및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
    - 사업전 · 후 도면, ESCO와 하도업체/물품구입업체 간의 견적서 등
  - ③ 에너지사용자의 준공확인서(기성확인서)
    - 단,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“완성검사필증” 및 전기안전공사의 “사용전검사필증”으로 함.
    - 계속사업의 경우는 투자사업장에서 발행한 당해연도 기성확인서로 함
  - ④ 동의서
  - ⑤ 기타
    - 사진(설비전경 및 명판), ESC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
  - ⑥ ESCO자금을 부분적으로 융자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음
- ▶ 기타 확인이 필요하여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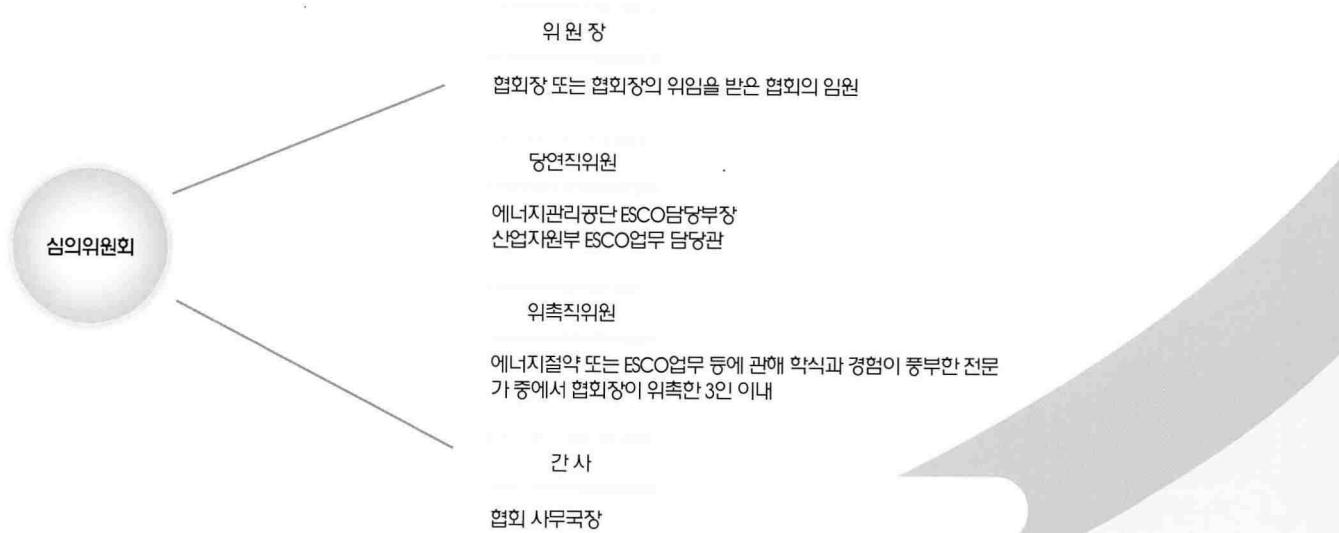
## 자체투자실적 평가기준

-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(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-17호)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(산업자원부 예규 제13호)에 따름
- 2년 이상 계속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말 기성고를 근거로 하여 금액 평가

## 인정절차



## 심의위원회 구성



## 사후관리

- 협회는 자체투자사업의 이행여부, 에너지절감량 확인 등을 위해 ESCO에 자료 제출 요청(협회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산자부에 검사 요청)

## 자체투자실적 인정 비용 및 수수료

(단위 : 원)

사업규모	인정비용	수수료	비고
1억원 미만	406,605	30,000	· 사업규모는 자체 실적 인정 신청금액 기준
1억원 이상 5억원 미만	521,529	50,000	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636,789	70,000	
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	1,273,578	100,000	· 경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접인거비에 제
50억원 이상	1,910,367	150,000	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

주) 1. 전액 자체투자사업 실적인정 신청시 : 인정비용 및 수수료 납부

2. 정부 ESCO자금 추천을 받아 일부 자체 투자한 부분 실적인정 신청시 : 인정비용 제한 수수료만 납부

## 자체투자실적 인정 취소 및 효력정지

## · 인정 취소 대상
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자체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은 경우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## · 인정 효력의 정지

- 「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 인정규정」제5조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) 규정에 따라 협회  
회장은 사후관리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등 20일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사업의 사후관리가 완  
결될 때까지 자체투자실적 인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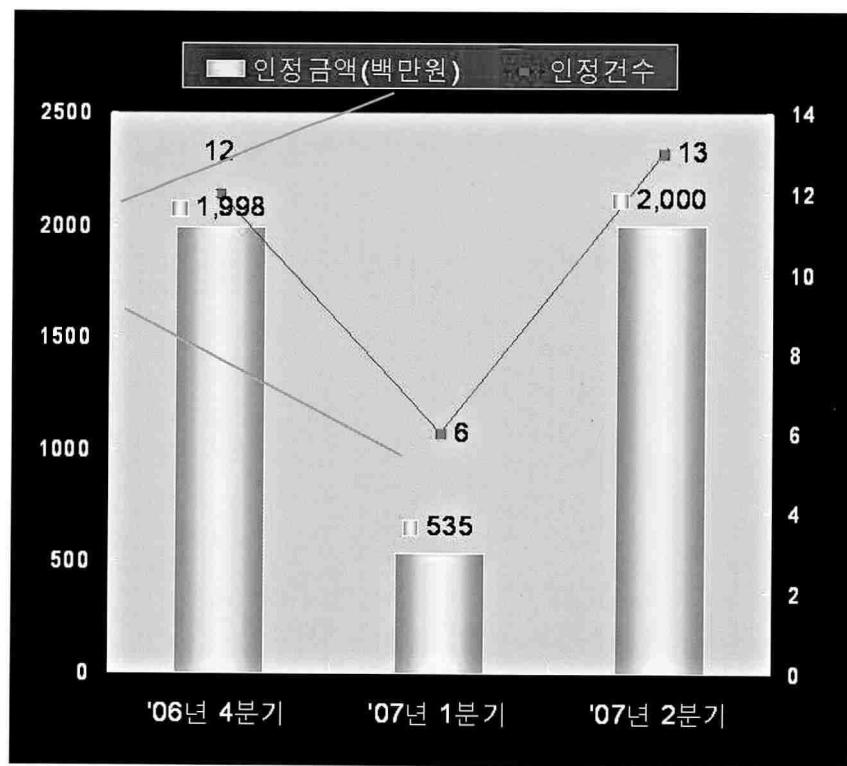
· 자체투자실적 인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ESCO는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 투자실적 인정 신청자격 제한

## 자체투자실적 인정 결과 ('06년 ~ '07년 2분기)

&lt; 표 1 &gt;

인정시기	신청건수	미인정건수	신청금액	인정금액	비고
'06년 4분기	14	2	5,209백만 원	1,998백만 원	
'07년 1분기	6	—	1,073백만 원	535백만 원	
'07년 2분기	13	—	5,879백만 원	2,000백만 원	
계	33	2	12,161백만 원	4,533백만 원	

- 2006년 4분기 미인정 2건은 ESCO 투자사업으로 불인정
- <표1>의 신청건수 및 모든 금액은 100% 및 일부(정부 ESCO자금을 일부 추천 받은 사업) 자체투자를 포함
- 신청금액과 인정금액은 정부 ESCO자금 추천 시 ESCO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만큼 차액 발생



< 표 2> 분기별 자체투자실적 인정 현황